

제 521 호

1975. 9. 19.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편집 : 문화정보실장 조용하  
전화 75-7834

인쇄 :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  
전화 75-6090

# 시보

## 차례

### ◎ 조례

제 977 호 : 서울특별시 토지 및 강제장사용료	
징수조례증 개정조례 ..... 3	
제 978 호 : 서울특별시 혼·분식 실천강화협의회	
조례증 개정조례 ..... 3	

### ◎ 규칙

제 1509 호 : 서울특별시 도로수익 자부담금징수	
조례시행규칙증 개정규칙 ..... 4	
제 1511 호 : 서울특별시 불량건축물개방사업보조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 4	
제 1512 호 : 서울특별시 가스공급조례 시행규칙증	
개정규칙 ..... 7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서울특별시

◎ 고 시

제 146 호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 ( 학교 )

    실시 계획인가 ..... 16

제 147 호 : 서울도시계획시설 ( 도로 ) 일부변경 ( 폐지 ) ..... 19

◎ 공 고

제 218 호 : 도시계획시설 ( 도로 ) 실시 계획공람·공고 ..... 20

제 222 호 : 도시계획사업 ( 공용의정사 ) 시행자지정승인 ..... 25

제 223 호 : 화재경제지구 지정해제 ..... 26

제 224 호 : 도시계획시설 ( 도로 ) 실시 계획공람·공고 ..... 29

제 226 호 : 환기예정지 지정공고 ..... 41

## 조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묘지 및 장례장사용료 징수조례 중 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자준 [인]

1975년 9월 19일

## ◎ 서울특별시 조례제 977 호

서울특별시 묘지 및 장례장사용료  
징수조례 중 개정 조례

서울특별시 묘지 및 장례장사용료  
징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별표 1 묘지 사용료

일반묘지 3.3㎡에 대하여 300 원

## 부 칙

이 조례는 197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혼·분식실천강화협의회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자준 [인]

1975년 9월 19일

## ◎ 서울특별시 조례제 978 호

서울특별시 혼·분식실천강화  
협의회 조례 중 개정 조례  
서울특별시 혼·분식실천강화협의  
회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3조 ①항중 "위원 15"를 "위원

16"으로, ③항 단서중 "제 11호내지  
제 13호에"를 제 11호 내지 제  
15호에"로 11호중 "2명"을  
"1명"으로 하고 13호 다음에  
14호 및 15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14. 양곡소매상 대표 1명

15. 가공공장 대표 1명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43-4 제 521 호 시

보 1975.9.19

서울특별시 도로수익자 부담금징수 조례시행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인]

1975년 9월 19

규 칙

⑤ 서울특별시 규칙제 1501호

서울특별시 도로수익자부담금

징수조례시행규칙중 개정규칙

서울특별시 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3조 제 1호 및 제 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조례제 8조제 2항제 1호 및 제

2호의 구역은 부과총액의 100분의 50

2. 조례제 8조제 2항제 1호의 구역은 전호부과비율의 100분의 25를  
가산

제 4조 제 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전조제 2호 규정에 의한 100분  
의 25 가산부과비율은 도로에 청한

토지질이외 비례로 산정부과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불량전물개량사업 보조금지급조례 시행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자춘 [인]

1975년 9월 19일

⑥ 서울특별시 규칙제 1511호

서울특별시 불량전물개량사업

보조금지급조례 시행규칙

제 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불량전물개량사업 보조금지급조례(이하 "조례"라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지급대상) 보조금의 지급은 조례제 3조의 지역에 불량전물을 소지한자로 조례제 5조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조 (사무의 위임) 조례에 의한 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는 구청장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제 4 조 ( 보조금의 지급결정 ) ① 관  
할구청장이 보조금을 지급하고자  
할때는 미리 "불량전물개량사업보조  
금 지급방침"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지급을 결정할 때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조례제3조 및 시행규칙제2조  
에 의하여 작성한 지급대상지명부
2. 불량전물개량사업계획서
3. 현황사진

제 5 조 ( 보조금 지급결정의 통보 )  
구청장이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어 보조금지급을 결정하  
였을 때에는 그 결정사항을 보조  
금의 지급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시에는 통보를 받은 날  
로부터 1개월이내에 다음 서류를  
갖추어 관할구청장에게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토록 명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본인이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인을 정하여 신청할 수 있으  
며 이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지급신청서 ( 별지제 1호 )
2. 지급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3. 지급대상자의 인감증명

제 6 조 ( 보조금의 지급 ) ① 구청장  
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지급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급  
대상여부와 불량전물의 개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지급할 때에는 보조  
금지급영세표를 작성하고 영수자의  
인감을 날인 받아야 한다.

③ 보조금 지급대상자가 특수한  
사유없이 보조금지급결정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신청하  
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7 조 ( 사정변경에 따른 결정취소 )

제 4 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지급방침이 결정되었다 하여도 보조금지급대상의 결정에 하자가 있거나 기타 충돌한 사유로 지급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조금의 지급정정을 취소하고 보조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8 조 (보조금지급액) 조례제 7 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이전에 제 4 조 및 제 5 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량천물개량사업방침이 결정되고 시행당시까지 정비되지 아니한 전용에 대한 보조금은 이 규칙에 정한 금액으로 지급한다.

## &lt;별표 1&gt;

## 보조금지급신청서

## 1. 대상자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2. 개량 위치: 구 동 번지

3. 개량 일 시: 년 월 일

4. 신청 액: 원

19 . . .

신청인

(K)

구 청·장·귀하

첨부: 1. 주민등록 등본 1 통

2. 인감증명 1 통

서울특별시 가스공급조례 시행규칙  
중 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  
다.

1975년 9월 19일

서울특별시장 구자준 [인]

### ○ 서울특별시 규칙 제 1512 호

#### 서울특별시 가스공급조례시행

#### 규칙 중 개정 규칙

서울특별시 가스공급조례 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3조(공사의 신청) ① 가스를 공  
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1호 서  
식에 의하여 관할도시가스사업소장  
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 4조 1항 중 "본관 및 지관" 을 "본  
지관, 풍급관 및 내관의 부설공사로  
"일반건설사업" 을 "일반건설업" 으  
로 하고 제 1호 및 제 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기술능력

시공기술자 1인 이상으로 하되  
고압가스 기계기능사로 또는 고

압가스 화학기능사로 자격증을 소  
지한자라야 한다.

#### 2. 자본금

불입자본금 또는 재산평가액이  
300만원이상이어야 하며 영업자  
납세번호증을 소지한자라야 한다.  
제 5조 중 "조례제 5조제 1항의 규정"  
을 "조례제 5조제 1항 단서의 규정"  
으로 "제 3호 폐설증명서" 를 "3  
호 폐설증명서"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 등본) "로" 제 4호 영업  
신장" 을 "4호 영업자 납세번호증"  
으로 하고 "6호 설적증명" 을  
삭제한다.

제 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6조(시공업자의 업무구역 등) ①  
서울특별시장이 시공업자를 승인할  
때는 업무구역을 제한하거나 시공  
업자의 구역별 정원을 규정할 수  
있다.

② 서울특별시장은 시공업자를 승  
인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 3호 서식의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 7조의 2, 3, 4, 5를 다음과 같이

41-8 제 521 호

시

보 1975.9.19

신설한다.

제 7 조의 2 (공사외법위동) ① 조례  
제 5조제 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사외 법위는 전설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사로서 다음과 같이  
구분 시행한다.

1. 내관의 신설, 개조, 수선 또는  
철거 (가스미터기로부터 가스렌지  
까지).

2. 여소기구의 연결 또는 제조  
(2) 내관의 신설 및 사용의 중지  
폐지후 가스를 사용코자 할 때는  
별지제 6호서식에 의하여 사업소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 7 조의 3 (공사비의기준액고시) ①  
조례제 5조제 2항에 의한 기준액의  
고시는 년 1회로 한다. 다만, 물  
가와 현저한 변동이 있을때는 이  
를 변경 고시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고시는 제 7 조의 2, 제  
1 항제 2호에 한하여 공사는 다  
음과 같이 구분하여 고시한다.

1. 연결공사

가스관의 종류, 구경 및 길이를기준

## 2. 개조공사

기구의 종류 및 분구수를기준

제 7 조의 4 (공사비의 부담) 조례제 7  
조제 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로 부담하는 공사비는 독립주  
택의 가스수요에 한하며, 그 부담  
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다만  
아파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1. 공급관 해당부분의 공사비+  
도로복구비 해당액
2. 공급관 해당부분중 수요가의  
대지 경계에서 '별장 12호'를 초과  
하는 부분의 공사비

제 7 조의 5 (가스미터의 보호관리)  
조례제 13조의 2에 의한 가스미터  
의 해손, 부식등의 방지 및 겹침  
장애등을 제거하기 위한 가스미터  
의 보호관리에 따른 조치명령을  
별지제 7호서식에 의거 시행한다.

제 11조중 제 1호를 삭제한다.

제 14조중 "별지제 6호서식"을 "별지  
제 8호서식"으로 한다.

제 16조제 1항을 "별지제 7호, 제 8호

서식"을 "별지제 9호서식"으로 하고 제 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조례제 24조제 2항의 고지카드 는 별지제 10호서식에 의한다.	제 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17조(과태료처분기준) 조례제 26 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 기준은 다음과 같다.
--	--

과 태 료 처 분 기 준

처 분 기 준	과 태 료	
	조례제 26조제 2항과당	조례제 26조제 1항과당
사용로를 연말한 목적으로 미터기파손시	5,000 원	도 ⑩
봉인과 손사	5,000	3
공급의 정지중 무단사용	5,000	5
공급의 중지중 무단사용	3,000	2
미터기이전 부정연결사용시	5,000	5
미터기 무단이설	5,000	
내관공사의 임의시행	5,000	5
부정시 공업자	5,000	
별지 : 제 1, 2, 3, 6, 7, 8, 9, 1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	

41-10 제 521 호

시

보 1975. 9. 19.

<별지제 1호서식>

가스공사신청서

주 소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호(동반)

성 명 전 화

본인이 상기 장소에 거시가 공급하는 가스를 사용하기 위하여 다음 조건으로 신청하니 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건

1. 본인이 설치한 가스공급장치는 이를 일체 사업 기부해남한다.
2. 가스공사 시공도중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비를 낭비하지 못할 시는 공사를 충당하여도 이의가 없다.
3. 공사비를 날카내 낭비하지 않을때는 시설을 철거하고 그 비용을 서울특별시 가스공급 조례 제 27 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 압류처분을 행하여도 이의가 없다.
4. 공사비 예산액과 정산은 서울시공사비기준표에 따른다.
5. 공사후 가스를 사용할때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서기 197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날)

서울특별시 도시가스 사업소장 귀하

제 521 호

서

보

1975. 9. 19 41-31

<별지 제 2호 서식>

가스공사지 공업 자승인 신청서 (설정)

소재지 :	명
상 호 :	주민등록번호
성 명 :	생년월일
자 본 금 : (개인) 재산평가액	(법인) 공정자본금
	불입자본금
종업원 수 : 사무원 현장판티인	명 사용인 명
가스시 공업이 외에 행하는 영업의 종목 :	

서울특별시 가스시공업자로 지정을 받고자 신청 하나이다.

1975년 월 일  
신청자 (인)

서울특별시 장관

첨부서류

1. 이력서 (대표자, 기술자 각 1부).
2. 신원증명서 (대표자, 기술자 각 1부).
3. 재산평가조서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
4. 영업자 납세번호증.
5. 자격 또는 면허증 사본.

41-12 제 521호

시

보

1975. 9. 19

〈별지 제 3 호서식〉

사  
진

가스시공업자 지정서

제 호 :

상 호 :

소재지 :

대표자 :

위의 자를 서울특별시 가스시공업자로 지정함.

1975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RJ)

제 521 호

시

보

1975. 9. 19. 41-13

〈별지 제 6 호서식〉

가스 공급 신청서

접수번호 :

1. 가스전 소재지 :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호(동 번)
2. 가스전 소유자 :
3. 가스계 태번호 :
4. 공사 내 역 :
5. 특기 사항 :

서기 1975년 월 일

신고인



서울특별시 도시 가스사업소장, 귀하.

2321

43-14 제521호

시

보

1975.9.19

&lt;별지제 7호서식&gt;

## 가스미터보호관리조치명령

가스전 번호		성명	
주소			
보호조치사항	개선할사항		
이행기간			

가스공급의 원활을 위하여 귀역에 설치한 가스미터에 대하여 위와 같이 개선을 명합니다.

만약 위 기한내에 완전 이행치 않을시는 가스공급 중단등의 불미스러운 처분을 당하게 되오니 가스미터 보호관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75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제 521 호

시

보

1975.9.19 41-15

&lt;별지 제 8호 서식&gt;

## 독 축 장

가스전체호

주 소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구 분	년 도	월 분	고지 금 액	가 산 금	합 계
가 쟈 용 슬					
가 스 세					
손 료					
합 계					

귀하의 가스사용료가 위와 같이 책정되었으니 당소에서 기이 고지한  
납입고지서에 의거 197 년 월 일까지 지정된 곳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이 기한이 경과되면 공급의 정지 또는 재산차압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납부처 : 1. 상업은행 본, 지점.

2. 구청, 출장소내의 시금고 수납창구

197 년 월 일

도·시·가·스·사·업·스·장

41-16 제 521 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원동 1975. 8. 19

주 : 운송취급자인  
이름이란  
정수증은 무효입니다.

&lt;별지 제 9호 서식&gt;

원 부 (가스)					
가스 사용료					
과 목	월 분	채 호	조 정 량		m <sup>3</sup>
년도					
주 소	서울특별시 구 동 호 아파트				
성 명					
납 기 분	기 한	가 스 사 용 료	가 스 세 수 료	손 료	합 계 액
납기내	년 월 일 까지				
납기후 (가산금 포 함)	년 월 일 부터				
수입일부인					
(수납은행 등)					

영 수 증 (가스)					
가스 사용료					
과 목	월 분	채 호	조 정 량		m <sup>3</sup>
년도					
주 소	서울특별시 구 동 호 아파트				
성 명					
납 기 분	기 한	가 스 사 용 료	가 스 세 수 료	손 료	합 계 액
납기내	년 월 일 까지				
납기후 (가산금 포 함)	년 월 일 부터				

위의 금액을 영수 합니다.

수입일부인	은행	취급자인
공무원은 현금을 수납하지 않습니다.		

수현지제 9호서식 >

남 일 페 풍 지 서 (가스)

과 목	가 스 사 용 료				
	년도	월분	책 호	조정량	m <sup>3</sup>
주 소	서울특별시	구	아파트	동	호
설 명					
부 기 분	기 한	가 사용료	가스세	손료	합계액
남기내	일 까지				
남기후 (가산금 포함)	일 부터				

위 금액을 영수함

수입일부인

은행

수입금 출납원 거하.

남 일 고 지 서 및  
남 일 페 풍 지 서 (가스)

과 목	가 스 사 용 료				
	년도	월분	책 호	조정량	m <sup>3</sup>
주 소	서울특별시	구	아파트	동	호
설 명					
부 기 분	기 한	가 사용료	가스세	손료	합계액
남기내	일 까지				
남기후 (가산금 포함)	일 부터				

납부처 : (남기내) 시내지 품금 수납  
대리은행 본 지점.

수입일부인 (남기후) 1. 상업은행 본점 지점.  
2. 구청 출장소내의 시금

고 수납장구  
197년 7월 15일  
서울특별시도시가스사업소장

(도시가스사업소 수납부서인용)  
남기내가  
경과하여야 합니다.

제 521호

시  
보

1975.9.19 41-17

2323

41.-18 제 521 호

시

四

1975.9.19

**〈별지 제 10 호서식〉**

가스요금을 우선 이 카-드로 알려 드립니다. 잘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스 요 금 고 지 카 드

197

가스전소재지	동	가	번지	호
가스번호		소유자		사용자

위 고지액을 기한내에 고지서에 기재한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가스사업소장

- 가스요금을 내시면 반드시 소정의 영수증을 받으실시요.  
이 카드에 남부화인하우저나 영수표시할것을 인정되며, 많습니다.
  - 이 카드에 고지되는금액은 남부기기하시게 됩니다.  
지나면 1 할의 가산금을 더 받을경우를 확정되며, 남부기한이

## 고 시

## ⑤ 서울특별시 고시 제 146 호

서울특별시도시계획사업  
업(학교) 실시계획인가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80 호 ( 75. 6. 3 )로 도시계획사업(학교) 시행허가된 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 사업(학교) 실시계획을 도시계획법 제 25조에 의거 인가하고 등록법 제 26조와 건설부 고시 제 123 호 ( 74. 4. 4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 및 연세대학교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5. 9. 19

서울특별시장

1.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동 산 9-1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

(학교) 실시계획인가(연세대학교)

3. 사업시행면적 : 785 평 ( 약 2,591 ㎡ )
4. 사업시행자 주소, 성명 : 서대문구 신촌동 134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이사장 이 천 환
5. 사업착수, 준공예정년월일
  - a. 착수년월일 : 1975. 10
  - b. 준공예정년월일 : 1975. 11. 30.

## ⑥ 서울특별시 고시 제 147 호

서울도시계획시설(도로)

일부변경(폐지)

1. 당시 도시계획시설(도로)을 다음과 같이 일부변경(폐지)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조 및 제 13조와 건설부고시 제 123 호 ( 73. 4. 4 )의 관한위임 사항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당시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5. 9. 22

서울특별시장

41-20 제521호

시 보

1975.9.19

## 가. 노선변경조서 ( 폐지 )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	기점	종점	비고
폐지	소로	3		6m	44m	성복구동소문동 4 앞	동소문동 4 앞	
"	"	3		6	27	서대문구대신동 21-1	대신동 21-1	

별첨 : 도면표시와 같음 ( 도면생략 ) 도면은 서울특별시청 및 관할구청

에 보관.

## 공 고

## ◎ 서울특별시공고제 218호

## 도시계획시설(도로)

## 실시계획 공람 공고

1. 건설부, 고시 제 177호 ( 62.12. 8 )로 고시된 궁정동-효자동간 도로개설 공사 구간내의 저축되는 토지의 도시계획 사업 실시 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25 조 및 동법 제 34 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일반의 공람에 공한다.

2. 관계도서는 종로구청 토목과에 비치하고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5. 9. 19  
서울특별시장

## 공람 개요

- 사업 시행의 위치 : 종로구 궁정동 11-3 - 궁정동 37-1 간
- 사업의 종류와 명칭 : 궁정동-효자동간 도로 신설공사
- 사업의 규모 :
  - B = 25m
  - L = 260m
- 사업 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 사업 차수 및 준공예정 :
 

75.9 - 76. 11.30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 별첨토지 : 조서
-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 수용법 제 4 조 제 3 항의 관계인 주소 성명 : 별첨

## 토 지 조 서

순위	소재지	분할전표시			분할후표시			소 육 자		
		지번	지목	지적	자 번	지목	지적	주 소	성 명	
1	효 자				137-2	도로	16.0	효자동	137-2	김명자
2					132-20	"	6.7		132-20	이세웅
3					132-11	"	9.8		132-11	이창순
4					132-12	"	10.8		132-12	박복남
5					132-13	"	13.5		132-13	박남성
6	궁정동				66-4	대지	4.4	궁정동	66-1	정학근
7	"				66-1	"	0.3		66-1	"
8	"				69-4	"	38.6		69-4	이순복
9	"				69-3	"	3.3		69-3	설원식
10	"				68-2	"	8.0		68-2	영인미일
11	"				66-5	"	15.4		66-5	정학근
12	"				67	"	25.0		67	이정호
13	"				59-2	"	0.5		59-2	박운선
14	"				67-1	"	1.7		67-1	이정호
15	"				66-2	"	23.0		66-2	김익수
16	"				59-3	"	0.2		59-1	박운선
17	"				60-2	"	3.3		60-2	이홍기
18	"				60	"	31.3		"	"
19	"				60-1	"	0.2		"	"

41-22 제521호

## 시 보

1975.9.19

순위	소재지	분할전표시			분할후표시			소유자	
		지번	지목	지적	지 번	지 목	지 적	주 소	성 명
20	궁정동				64-3	대지	21.0	궁정동 64-3	이홍기
21	"				62-5	"	22.7	62-5	김삼연
22	"				60-3	"	25.7	60-3	권상진
23	"				61	"	36.0	61	최옥상
24	"				62-6	"	14.0	62-6	송년태
25	"				56-3	"	0.3	56-3	이재식
26	"				43-2	"	23.3	43-2	이정희
27	"				41-1	"	36.7	41-1	양경린
28	"				40-1	"	20.1	40-1	신영직물
29	"				28-1	"	19.0	28-1	유봉춘
30	"				41-2	"	20.3	41-2	서진주
31	"				42-2	"	21	42-2	이정희
32	"				35-2	"	36.7	"	"
33	"				36-1	"	56.0	"	"
34	"				36-3	"	9.2	36-3	임창기
35	"				37-1	"	0.2	37-1	재단법인 유화학원
36	"				32-2	"	23.0	32-1	이미자
37	"				34-2	"	51.2	34-2	이정희
38	"				33-2	"	38.1	33-2	"

순위	소재지	분할전 표시			분할후 표시			소 용 자	
		지번	지목	지적	지 번	지목	지적	주 소	성 명
39	궁정동				34-1	대지	5.3	궁정동 33-2	이 계 회
40	"				31-1	"	21.0	31-1	정 세 원
41	"				31-3	"	6.2	31-3	김 육 근
42	"				23-2	"	6.9	23-9	양 청 호
43	"				25-1	"	19.0	25-1	이 동 성
44	"				25-2	"	19.0	25-2	오 문 섬
45	"				29-3	"	21.0	29-3	이 세 용
46	"				27-1	"	11.9	27-1	이 경 천
47	"				15	"	20.0	15	박 일 조
48	"				14-3	"	0.7	14-1	"
49	"				16-5	"	40.0	16-5	변 태 회
50	"				16-10	도로	34.6	16-4	홍 순 경
51	"				16-7	"	10.4	16-7	장 백 날
52	"				16-8	대지	6.8	16-8	안 영 훈
53	"				16-9	"	5.0	16-3	현석 주
54	"				16-6	"	25.0	16-6	변 우 영
55	"				13-1	"	40.0	13-1	김 도연
56	"				13-39	"	3.4	13-39	김 회 철
57	"				13-43	"	24.0	13-43	박 재 규

41-24 제 521 호

시 보

1975.9.19

수위	소재지	분할전표시			분 할 후 표 시			소 유자	
		지 번	지 목	지 적	지 번	지 목	지 적	주 소	성 명
58	궁정동				13-22	대지	16.0	궁정동 13-22	신상덕
59					13-35	"	12.0	13-35	최석희
60					13-42	"	27.3	13-42	남창덕
61					12-5	"	24.5	12-5	민병련
62					12-4	"	4.0	12-4	김병기
63					13-3	"	2.8	"	"
64					11-3	"	21.7	11-3	황용금
65					13-6	"	28.0	"	"
66					13-37	"	5.0	13-37	장장손
67					13-44	"	9.8	13-44	박기화
68					13-40	"	11.0	13-40	박진호
69					25-3	"	12.0	25-3	정윤상
70					24-2	"	4.5	24-2	김윤갑
71	신교동				61-1	도로	3.3	신교동 61-1	금정자진
72	"				61-2	대지	21.3	61	"
73	"				62-2	"	3.7	62-2	손란순
74					70-17	"	10.0	"	황용환
75	궁정동				26	"	16.0	궁정동 26	김학식
76	"				25-4	"	8.0	25-4	박기순

제521호 시 보 1975.9.19 41-25

연 번	번 지	총 평 수	수 용 평 수	비 고
49	효 자 동 132-3	11.0	4.5	목 조 화 증
50	" 132-1	11.0	1.4	"
51	" 137-1	11	1.8	"
52	궁 경 동 69-1	13.0	2.0	"

○ 서울특별시 공고 제 222 호

도시 계획 사업(공용의 청사)

시 행 자 지 정 승 인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138 호

(75.8.29)로 도시계획시설

(공용의 청사) 결정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 지정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3조 제 5항 및 건설부 고시 제 123 호 (73.4.4)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천호출장소

시민봉사실 및 사업시행청인 법무부에 각각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5.9.22

서 울 특 별 시 장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락동 산 5의 31 일지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 (공용의 청사) 사업 성동구체 소 시설사업
- 사업시행면적 : 77,550
- 사업시행자의 주소, 성명 : 법무부장관
- 사업의 차수 및 준공예정일

41-26 제 521호

시

보 1975.9.19

가. 착수 년월일 : 1975. 10.

나. 준공예정년월일 : 1976. 12. 31.

6. 조 건

가. 사업시행자는 도시계획법 제 28 조 및 동법 제 34 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받아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공사 송달은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 28 조의 규정에 의하여 2개 이상의 일간 신문에 공고 하여야 한다.

다. 도시계획법 제 78 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 사항이 없어야 한다.

라. 이 사업시행에 있어 감독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명하는 시설의 설치와 기타 행정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마. 이 지정승인으로는 사업을 시행할 수 없으며 별도 사업실시 계획을 인가 받아야 한다. 끝.

◎ 서울특별시 공고제 223 호

화재경계지구 지정 해제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된 다음 지구는 소방법 제 49 조 제 1항의 규정의 화재경계지구 지정요건이 해소되었으므로 이를 해제한다.

1975. 9. 29

서울특별시장

위 치	지 구 명
마포구 아현 2동 산 7번지	아현 2동 화재경계지구
마포구 공덕동 429	공덕연세상가 화재경계지구

제 523 호 시 보 1975.9.19 41-27

## 궁정동-신교동간 전용조사

일 번	번 자 지	총 평수	수용평수	비 고
1	효·자·동 1	7.0	7.0	목조화증
2	궁·정·동 11-3	32.0	32.0	"
3	" 12-2	14.0	14.0	"
4	" 13-6	16.1	16.1	"
5	" 13-7	17.0	6.7	"
6	" 13-30	13.0	40	"
7	" 13-24	20.3	11.7	"
8	" 13-35	6.0	6.0	"
9	" 13-22	8.0	8.0	"
10	" 13-21	13.0	13.0	"
11	" 13-18	12.0	4.3	"
12	" 13-5	7.0	7.0	"
13	" 13-19	5.0	5.0	"
14	" 16-3	14.0	14.0	"
15	" 16-2	15.0	1.5	"
16	" 16-1	19.0	2.5	"
17	" 16-6	10.0	10.0	"
18	" 13-1	15.0	15.0	"
19	" 16-5	19.0	19.0	"
20	" 24	9.0	1.0	"
21	" 23	9.0	1.3	"
22	" 25-1	10.0	10.0	"

41-28 제 521호 시 보 1975.9.19

연 번	번 지	총 명 수	수용 평수	비 고
23	궁 정 동 25 - 31	5.0	5.0	목 조 와 즐
24	" 26	6.0	6.0	"
25	" 25 - 4	3.0	3.0	"
26	" 25 - 2	11.0	11.0	"
27	" 29 - 1	10.0	10.0	"
28	" 27	16.0	16.0	"
29	" 31 - 2	5.0	5.0	"
30	" 31 - 1	11.0	11.0	"
31	" 32	14.0	7.0	"
32	" 38	20.0	20.0	"
33	" 41 - 2	9.0	9.0	"
34	" 41 - 1	13.1	13.1	"
35	" 40	25.0	22.0	"
36	" 62 - 1	34	30.0	"
37	" 61	41.3	41.3	"
38	" 60 - 3	23.0	23.0	"
39	" 60	57	57	"
40	" 64 - 1	18.0	18.0	"
41	" 66 - 2	15.0	15.0	"
42	" 66 - 1	15.0	15.0	"
43	" 68 - 1	14.0	14.0	"
44	" 68 - 2	8.0	8.0	"
45	" 67	12.0	12.0	"
46	" 69	22.0	14.0	"
47	효 자 동 132 - 13	11.0	9.3	"
48	" 132 - 12	11.0	8.0	"

## ○ 서울특별시공고제 224 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설계계획 공람 공고

1. 전설부교시 제 177 호(62.12.8)  
로 고시된 울지로 3 가~4 가간 도  
로 확장설공사 구간내의 저속되는 토  
지의 도시계획사업설계획을 수립  
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25 조 및  
동법 제 34 조의 규정에 따라 공  
고일로부터 14 일간 일반의 공람  
에 풍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건설행정  
과에 배치하고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

1975. 9. 25

서 울 특 별 시 장

## &lt;공 람 개 요&gt;

1. 사업시행의 위치: 중구 울지로 3 가  
140~울지로 4 가 토타리
2. 사업의 종류와 명칭: 울지로 3 가~  
4 가간 도로확장공사
3. 사업의 규모:
  - (1) L = 459 m
  - (2) B = 22 m → 220 m
4.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장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  
1975.8.1 ~ 75.12.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별첨토지조사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  
지수용법 제 4 조제 3 항의 관계인  
주소·성명: 별 첨

## 도 지 조 서

순위	소재지	분할전표시			분할후표시			소유자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지적	주소	성명
1	울지로 3 가				141-4	대지	0.2	장충1가35-2	이정수 의 1인
2	"				140-12	"	7	344-9	이성호
3	"				139-7	"	11	"	"
4	"				140-11	"	0.9	월동2가134-9	최인철
5	"				139-8	"	9.5	"	"
6	"				139-6	"	2.5		국

41-30 제 521 호 시 보

1975.9.19

순위	소재지	분할전 표시			분할후 표시			소유자	
		지번	지목	지적	지 번	지 목	지 적	주 소	성 명
7	율지로3가				140-10	대지	1.6	상왕십리동71-108	박준환
8	"				139-5	"	10	"	"
9	"				140-9	"	3.1	성동구논현동 7호	유재현
10	"				139-4	"	6.8	"	"
11	"				139-9	"	1.2	"	국
12	"				140-8	"	4.2	보문동6가 64	박윤영
13	"				139-3	"	7	"	"
14	"				140-1	"	6	139-1	장원한
15	"				139-1	"	6	"	"
16	"				146	"	11	"	국
17	"				147	"	14	146	홍종만
18	"				148	"	11	율지로3가 148	서순성 외 1인
19	"				149	"	1	"	유정숙
20	"				151	"	3	"	"
21	"				152-2	"	8.8	명봉동 1가 195-1	김경학
22	"				230-4	"	2.8	230-1	임창수
23	"				230-2	"	28	"	국
24	"				231	"	9	"	귀서전매일
25	"				234-5	"	0.1	일정동 86	심윤구
26	"				233	"	11	227	박근배
27	"				232	"	1	"	박근애
28	"				234-4	도로	14.4	충무로 5가 25	이부영 외 1인
29	"				235	"	2	271	귀평정순일
30	"				237-2	대지	8.4	"	"
31	"				236	도로	4	"	"

순위	소재지	분할전표시			분할후표시			소유자	
		지번	지목	지적	지 번	지목	지적	주 소	성 명
32	을지로3가				234-3	도로	9	충무로5가25	이부여씨민
33	"				238	매지	5	271	정경순일
34	"				239-2	"	7	"	"
35	"				240-6	도로	11.5	충무로5가 25	이부영 의원
36	"				240-8	"	12.3	보문동7가 105-1	이화설 의원
37	"				239-1	"	6		귀숙
38	"				240-5	"	14		국
39	"				241-27	매지	18.7	남산동3가31-2	용이식
40	"				241-24	"	0.2	241	김종걸
41	"				239-3	"	7	보문동7가 105-1	이상익 의원
42	"				241-6	"	12.7	241	김해연
43	"				241-21	"	1.5	초동10-8	손창복
44	"				241-22	"	11	"	박병옥
45	"				245-20	"	17.3	"	"
46	"				241-25	"	5.4	241	김종천
47	"				246-3	"	5.1	"	"
48	"				246-1	"	5	"	"
49	"				245-1	"	5	"	"
50	"				245-2	"	3	"	"
51	"				241-23	"	4.4	"	"
52	"				247-1	"	8	동래문용동228	유세법
53	"				247-2	"	7	을지로2가 101-30	김합경

41-32 제 521 호

시 보

1975.9.19

순위	소재지	분할전표시			분할후표시			소유자		
		지번	지목	지적	지 번	지 목	지 적	주 소	성 명	
54	을지로3가				247-3	대지	8	마포구현석동108-41	이영자	
55	"				145-2	"	0.1	효자동138-12	김병하	
56	"				242-6	"	1.2		서울시	
57	"				249-2	"	5.6		국	
58	"				250-4	"	4.8		국	
59	"				250-5	"	0.7	인현2가60	김용택	
60	"				250-6	"	16.7	"	"	
61	"				250-3	도로	15		국	
62	"				251-4	대지	4.7	오장동200-5	임용석	
63	"				251-5	"	14.7	"	"	
64	"				251-6	"	13.8	을지로3가251-3	이순남희1인	
65	"				300-3	"	4.3	마포구현석동108-47	이영자	
66	을지로4가				1-2	"	9	신림동362	표덕수	
67	"				1-3	"	19.1		국	
68	"				1-5	"	1.7	1-1	김만득	
69	"				5-6	"	2.1	효창동67	김향자희1인	
70	"				5-7	"	0.8	"	"	
71	"				17-7	"	32.6	14-1	오동희희2인	
72	"				17-6	"	2	18	최수천	
73	"				20-6	"	0.1		국	
74	"				20-5	"	0.4	18	최수천	
75	"				18	"	9.7	을지로3가316	홍길현	
76	"				18-1	"	1.2	"	"	
77	"				18-2	"	7.3	18	최수천	
78	"				19-4	"	2.9	을지로3가316	홍길현	

제 521 호 시 보 1975. 9. 19 41-33

순위	소재지	분할전표시			분할후표시			소유자	
		자번	자목	지적	자 번	자목	지적	주 소	성 명
79	용지로4가				19-5	대지	1.1	용지로3가 316	홍길현
80	"				30-1	"	61.4		국
81	"				43-3	"	19.1	종로제동 25-4	화남기획1인
82	"				43-4	"	0.2	소풍동 116-1	서울은행
83	"				45-2	"	26.3		제한국산Co
84	"				41-2	"	0.2	소풍동 116-1	서울은행
85	"				46-3	"	1.3	산림동 52	운영서
86	"				46-2	"	18.3	충무로5가 42	하석언
87	"				47-2	"	32	주교동 78	김우삼
88	"				48-2	"	12.3	40	성현문
89	"				49-7	"	28.3		국
90	"				49-6	"	10.5	신당동 353-31	이옥업
91	"				64-2	"	0.5	용지 2가 166	최선복
92	"				65-2	"	21.1	용지 2가 166	"
93	"				65-1	"	2	하월곡동 90	"
94	"				67-2	"	14.4	"	"
95	"				66-1	"	2.7	대구시남산동2구657	차완용
96	"				66-2	"	7.3	86-2	최묘선
97	"				66-3	"	11	장충 2가 186-69	박은옥
98	"				68-1	"	1.3		국
99	"				68-2	"	5	대구시남산동2구657	차완용
100	"				68-3	"	5.7	69-1	율두원
101	"				69-1	"	4.3		국
102	"				69-2	"	11.3	대구시남산동2구657	차완용
103	"				69-3	"	11.4	69-1	율두원

41-34 제 521 호

시 보

1973.9.19

순위	소재지	분할전표시			분할후표시			소유자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지적	주 소	성명
104	울진로4가				70-2	대지	8.9		울두수
105	"				71-3	"	12.2	71	강송심
106	"				71-4	"	4.3		국회1인
107	"				72-4	"	2.4	태평로2가330	한국특수 공업Co
108	"				72-5	"	1.7	"	"
109	"				77-2	"	0.1	77	김의혁
110	"				78-2	"	15	합정동386-14	이영화
111	"				79-1	"	5.3		이국
112	"				84-2	"	11.6	장충2가193-109	김정출
113	"				85-3	"	23.1	85-1	최영일
114	"				79-9	"	24.7	79	진소여
115	"				79-8	"	9.3	92	노성죽
116	"				79-7	"	1.5		국국
117	"				80-6	"	0.5		국국
118	"				80-7	"	0.3	92	노성록
119	"				80-8	"	15.4	성복동소문동2가71	최영배
120	"				80-9	"	14.1	188	구명서
121	"				80-10	"	13.3	79	진소녀
122	"				80-	"	0.5		국국
123	"				80-1	"	3		국국
124	"				80-2	도로	6.7		국국
125	"				80-3	대지	9.7	79	율영선
126	"				81	"	12	주교동 186	최충선
127	"				82-	"	21	"	"
128	"				82-1	"	0.5	"	"

순위	소재지	분할전 표시			분할후 표시			소 용 자	
		지번	지목	지적	지 번	지 목	지적	주 소	성 명
129	팔지로4가				83	대지	22	주교동 82	최 한 상
130	"				86-1	"	22	주교동 186	최 중 선
131	"				90-1	"	31	주교동 186	최 흥 선
132	"				91-1	"	1.4		최 국
133	"				91-2	"	19	성북·동소문동1가기	최 경 배
134	"				91-3	"	2		최 국
135	"				91-4	"	18.8	91	장 만 용
136	"				91	"	1.5		임 국 명
137	"				91-5	"	9.4	60	임 동 국
138	"				91-10	"	4.7		국 국
139	"				91-11	"	0.9		장 만 용
140	"				91-12	"	3	91	노 조 희
141	"				91-9	"	0.4		도 국
142	"				91-15	"	1.5	예관동 115-7	노 조 희
143	"				91-16	"	3	91-6	도 국
144	"				91-8	"	0.7		노 조 희
145	"				91-14	"	0.4	예관동 115-7	도 국
146	"				92-3	"	0.3	91	노 조 희
147	"				92-1	"	0.3		영 속
148	"				92-6	"	3.7		국 국
149	"				91-6	도로	2.5		국 국
150	"				92-	대지	3	예관동 115-7	노 순 희
151	"				92-11	"	0.1	"	도 국
152	"				92-2	"	4.9	993	조 계
153	"				92-4	"	6	91	영

41-36 제 521 호

시 보

1975.9.19

순위	소재지	분할전표시			분할후표시			소유자	
		지번	지목	지적	지 번	지 목	지 적	주 소	성 명
154	울지로4가				92-5	대지	3		국
155	"				92-7	"	11.1	92	노성숙
156	"				92-8	"	9	79	진소녀
157	"				92-9	"	2.9		서울시
158	"				91-7	"	2.4	92	노성죽
159	"				91-13	"	11.4	91	조제영
160	"				92-10	"	0.7	예관동 155-7 부산시 영도구 남항동 3가 115	노순희
161	"				14-3	"	4		오동하
162	"				255-12	"	0.2	255	승성순
163	"				255-13	"	4.8	강화면 신문리 105 박학천	
164	"				255-14	"	13.8	255-9	김부용
165	"				255-10	"	27.1	255	조명복
166	"				255-11	"	0.1	65	박재복
167	"				254-2	"	37.6	254	이회세
168	"				254-1	"	2.1	2.1.1	"
169	"				250	"	19	"	"
170	"				251	"	12	254	"
171	"				252	"	10	"	"
172	"				252-1	"	2.5	"	"
173	"				253	"	15	"	"
174	"				253-1	"	1.3	"	"
175	"				247-3	"	2.9	247	진금순
176	"				203-1	"	0.3	205	이아호
177	"				204-1	"	21	"	"
178	"				205-1	"	6.7	"	"

순위	소재지	분할 전 표시			분할 후 표시 (수용 대장)			소유자		
		지번	계목	치적	지 번	지목	지적	주 소	성 명	
179	을지로4가				205-2	대	17.3		국	
180	"				206-1	"	37	장충2가 116	남 두 품	
181	"				206-3	"	0.1	"	"	
182	"				206-4	"	0.2	"	"	
183	"				206-5	"	0.5	187	경성복인 합자회사	
184	"				207-1	"	2	예관동 6	강주식회 1인	
185	"				207-2	"	13	"	"	
186	"				207-3	"	8	"	"	
187	"				202-2	"	22	장충2가 116	남 두 품	
188	"				202-5	"	0.3	"	"	
189	"				211-3	"	0.1	홍제동 266-13	김영희	
190	"				211-2	"	0.9	"	김영희회 1인	
191	"				211-1	"	0.1	212	정봉진	
192	"				211-4	"	0.4		국	
193	"				202-3	"	14	장충2가 116	남 두 품	
194	"				208-2	"	13.8	예관동 6	강주식	
195	"				209-3	"	23	209-1	교성훈	
196	"				210-5	"	6	홍제동 266-14	김영희회 1인	
197	"				210-6	"	0.2	212	정봉진	
198	"				212-5	"	1.6	"	"	
199	"				212-6	"	0.3		국	
200	"				44	"	1		귀속	

41-38 제 521 호

시 보

1975.9.19

전 물 조 서						
소재	지번	구 조	지적	소유자 주소	성 명	비고
울지 3가	140-7	목 조 와 즐	17	140-7	이 성호	
"	140-6	"	20	월동 2 가 134-9	최 인영	
"	140-5	"	19.33	예장동 1 외 31	박 춘환	
"	140-4	"	16	성동구는현동 산7-16	유 재현	
"	140-3	"	20	보문동 6 가 64	박 윤영	
"	139-1	"	21.32	139-1	장 원한	
"	147	"	34	145	홍 종만	
"	148	"	10*	149	서 순성	
"	149	목 조 도 단	5	149	유 정숙	
"	152	목 조 와 즐	7	명륜동 2 가 195-1	김정학	
"	247-250	목 조 도 단	70	성북구 수유동 130	이관호외5인	
울지 4가	1-2	연 와조 후랜스	15.6	산림동 162	표 박수	
"	14-3	목조도단, 와즐	13	14-1	오동하	(와즐9) 도단4
"	17	목 조 와 즐	10	17	서 건석	
"	17	"	14.2	17	황 영철	
"	17	"	18.33	산림동 52	윤 영서	
"	18-2	"	17	18	허 수천	
"	19	"	22.25	18	홍 길현	
"	46-1	"	2	18	"	
"	46-2	목 조 도 단	16	충무5 가 42	허석면	
"	47	"	32		김 무삼	
"	48	"	19		성현분	
"	49-3	"	11		윤태억	
"	"	"	8		조태영	

제 521 호 시 보 1975. 9. 19 41-39

소재	지번	구 조	지적	소유자 주소	성 명	비교
울지로4가	64,65,67	목 조 와 즘	76.66	울지 2 가 166	최 선 복	
"	66-3	"	20	장충 2 가 186-39	백 문 육	
"	66-2	"	16	66-2	최 모 선	
"	69-2	"	24.13	66	차 완 용	
"	69-3	"	26	69-1	윤 득 원	
"	70	"	6	증립동 323	율성수외5인	
"	71-1	"	8	71-1	강 종 심	
"	71-2	"	5	태평 2 가 330	한국특수 공업 Co.	
"	78	"	6	성동구 동소문동6가90	이 영 화	
"	79-2	세 번 부 력 와 즘	2.25	태평 2 가 330	한국특수 공업 Co.	
"	80-3	연 와 조 와 즘	18.5	79	윤 영 설	
"	80-8	"	18.3	동소문동 1 가 71	최 명 배	
"	80-9	"	9.27	188	구 경 서	
"	80-9	"	9.27	울지 6 가 18-49	구 여 회	
"	80-10	"	18.5	92	전 소 여	
"	79-9 92-8	목 조 와 즘	19.7	"	"	
"	79, 80 91, 92	"	16.16	"	노 성 죽	
"	"	"	16	회현 2 가 78-2	정 해 주	
"	"	"	2.61		경성전기 Co.	
"	"	"	5.70	예 광동 115-7	노 순 희	
"	"	"	35.3	91	이 수 연	
"	"	"	84.87		이 국	
"	"	"	9.75		조 계 영	

41-40 제521호

시

보

1975.9.19

소재	자번	구조	지적	소유자주소	성명	비고
율지로4가	영4-2	목조와습	17		최명배	
"	91	"	15.78		장만용	
"	91-5	"	6.25	91	임윤명	
"	91-6	"	7.26	293	조계도	
"	83	"	27	82	최한상	
"	86-1 82,90-1	"	78		최홍선	
"	84	"	6	장충2가 193-109	김정출	
"	85-1	"	19	신힘동 41-2	최진래	
"	255-5	"	0.30	255	송성순	
"	255-8	"	10		박학전	
"	255-9	"	26	255-9	김부용	
"	255	"	41.4	255	조명복	
"	2549의5필	"	200		율세준의1인	
"	203-3	"	70		이이호	
"	247-1	"	6.2		진금순	
"	306-1	"	160.94		남두희	
"	209-1	"	27		교설훈	
"	208	"	26	208	강주심	
"	210-1	"	12	홍제동 266-14	김영희의1인	
"	(210) 212	"	3.2		정봉길	
"	"	"	0.4		양우천	

제 521 호

시

보 1975. 9. 19 41-41

○ 서울특별시공고제 226 호

환지예정지 지정 공고

1. 서울특별시에서 시행중에 있는  
망우주가 및 화양주가 지구내 일  
부토지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  
법 제47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공고 제188호  
(75.8.26)로 공람공고한 바 있  
는 일부 토지에 대하여 환지계획  
변경을 확정하고 환지예정지를 별  
첨도서와 같이 지정하였기 동법

제 47조 및 56조의 규정에 의하  
여 이를 공고한다.

2. 환지예정지 변경도서를 서울특별  
시 도시계획국 도시행정과 및 구  
할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  
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하며 토지소유자에게는 별  
도 송부할 것이나 미수령하는 토  
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대하  
여는 이 공고로 가름한다.

— 1975. 9. 25

서 울 특 별 시 장